

## 제 62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0년 3월 15일 상오 10시 25분

2. 폐 의 : 단기 4290년 3월 15일 하오 1시 10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부의장 정 응 균

5. 출석의원

재적의원 16명 전원

6. 출석 공무원

시장 하동현, 부시장 이병규

총무과장 장진식 및 각 과장

7. 의사일정

### ◆ 보고사항

- 1) 제 60회 제 1차 회의록 통과
- 2) 제 60회 제 2차 회의록 통과
- 3) 제 61회 회의록 통과
- 4) 진정서 제출 상황보고
- 5)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
- 6) 의장단 회의 개최관계 연락문 접수 상황보고
- 7)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### ◆ 부의안건

- (1)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 및 각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안 심의의 건
- (2) 단기 4290년도 제 1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,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

(3) 향동시장 적립금 일시 입체동의의 건

(4) 시 승용자동차 구입의 건

· 기타

(1) 한천공장 용수요구의 건

(2) 나주 비료공장 주주 모집의 건

## 8. 토의사항

※ 제 60회 제 1차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.

◎ 제 61회 제 3차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.

◎ 제 61회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.

◎ 진정서 제출 상황보고

절량 영세시민의 구호대책 호소진정서 제출상황을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

제출선 : 도의회 의장, 도지사

◎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

- 강성심으로부터 제출된 향동시장 관계 진정서 접수상황을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

◎ 의장단 회의 관계 연락문접수 상황보고

- 서울특별시 의회, 군산, 춘천시 의회로부터 연락된 의장단 회의 관계 연락문접수 상황을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

◎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- 작 3월 14일자 개최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을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

◇사회 부의장 정 응 표

- 축산동업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2건은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산업분과 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선언하다.

◇김 일 섭 의원

- 내무위원장 당선 인사하다.

◎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 심의의 건

◇김 성 균 의원

- 회의규칙 47조에 의거 시장님의 대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회의규칙에 그러한 명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과는 다른 것이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내 3월 28일부터 익 4월 6일까지 10일간에 공하여 시정감사를 실시하고 본 건 결산심의를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김성균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사위원배치를 할 것을 첨가한다.

1반. 김삼성, 이정권, 김성균, 천철수, 김경인, 강영락 의원

2반. 조양순, 김상태, 임석희, 김창희, 김상대 의원

3반. 김일섭, 박두순, 정응표, 김남진, 명남철 의원

◇부의장 정 응 표

- 동의를 성질상 김성균 의원의 동의와 강영락 의원의 동의를 별도로 나눈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.

- 김성균 의원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방금 동의에 첨가한 안대로 감사위원을 배치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각반의 감사위원은 지원제로 하여 편성할 것을 개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김 일 섭 의원

- 지원제를 채택한다면 1개반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.

◇부의장 정 응 표

- 참고로 말씀드리나 초대 의회시에도 지원제를 써왔던 것이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지원제로 하면은 일개소 편중을 초래하기 쉬우며 의원각자의 학력이라든가 소질에 입각하여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안을 내놓은 것이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강 의원의 동의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. 각자 자기본위의 방침이 서있을 것인데 지명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합의라도 있었던가 묻고 싶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현금 시민이 요구하는 획기적이고 철저한 사무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위원회가 내무위소관을 혹은 문사위소관 등을 편성하여 본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각 분과위원을 상호교체 하였다고 하나 직접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. 지원제를 채택하여 편중할 경우에는 적외 조절토록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본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지원제로 하든지 희망제로 하든지 가부표결에 붙이도록 하자.

- 표결결과

명남철 의원개의 재석 16명중 가 8표

- 강영락 의원동의 재석 16명중 가 6표로 부결되다.

◇사회 부의장 정 응 표

- 의장의 직권으로 개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선언

- 각반별 지원편성상황

의장 김삼성 총지휘

1반. 강영락, 이정권, 김성균, 김경인, 정응표

2반. 김상대, 김상태, 조양순, 김남진, 김창희

3반. 명남철, 천철수, 박두순, 김일섭, 임석희

◇사회 부의장 정 응 표

- 본 안대로 결정하였음을 선언

◎ 단기 4290년도 제 1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추가 경정 예산  
안 심의의 건

◇김 상 대 의원

- 원안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향동시장 적립금 일시입체 동의의 건

◇김 성 균 의원

- 본 건 당시 시민의 사활문제인 상수도 공사비 자체부담액에 일시 입체하  
는 필요원안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시 승용자동차 구입의 건

◇이 정 권 의원

- 원안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한천공장 용수 요구의 건

◇하 시장

- 상공회의소 회두(會頭) 나달수씨 측의 노력으로 한천공장 신설이 가능케 되는데 1일 평균 500통씩만 할애하면 되다는 것입니다. 당시의 발전상으로 보아서도 현금과 같이 한발이 계속 안되는 한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마는 이에 대한 제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.

- 본 건에 대하여 김창희, 김경인, 강영락 의원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음

◇강 영 락 의원

- 한발이 우심하여 시민의 식수에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소요량의 급수를 함으로써 해공장의 유치신설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나주비료공장 주주모집의 건

◇하 시장

- 본 건에 대하여는 저반 도에서 개최된 시장, 군수회의석상에서 본 건 주주에 있어서 수십인의 재별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서 주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.

- 나주 비료공장이 설립되면 특히 당시는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상권획득에 호기회라 아니 할수 없으니 본 건 주모집에 최대관심을 경주하여야 되겠으며 제 의원들께서도 극력호응하여 주시기 앙망 하옵니다.

◇사회 부의장 정 응 표

- 시정 감사실시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나 소정일정대로 진행이 안될적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주기 바라며 혹시, 타반 소속을 감시하려고 할적에는 당해 전반원의 양해하에 착수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그리고 보고사항으로도 말한바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될 의장단 회의에 제안할 안건을 의장단에 일임할 것인가. 불연이면 기초위원을 선정할 것인지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의원 권한확대에 대한 문제이니 의장단에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 지방의원의 임기 연장문제 등은 찬성하는 바이나 국회의원은 헌법 제 52조 의거 원내에서의 발언보장을 받는 것이나 지방의원은 하등의 명분이 없는 것이니 이 조문을 제안토록 동의에 참가한다.

- 동의집 수락

동의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280여 유인도와 300여 무인도를 포용하고 있는 당시 선창의 현황을 살펴보면 1일 40여척의 객선이 입출항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두에는 소수하차, 마차를 비롯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형편인바 갈매기Ep 소매치기 등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을 극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한 완화책으로 잔교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서 수일전 당시 축항 사무소장과도 상의한바 있으나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문제라 하오니 당시 의회의 결의로써 현장촬영도 하여서 본 건 중앙 요로에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

◇사회 부의장 정 응 표

- 사회자로서 발언하기 곤란하오나 저반 중앙해무청장과도 본 건에 대하여 진언한 바 있고 목하 추진 중에 있는 삼학도공사가 완성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오니 당분간 보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동장 선거운동문제에 대하여 해선거 규칙에 운동방법 등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원 선거법에 준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인정 않는 도지사의 처사는 월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.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해명



을 바란다.

◇서기 박 찬 대

- 여천군수와 도지사간의 조복(照覆) 통첩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을 도당국에 질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시 재무과 직원의 부정사실에 대하여 중앙지에 보도된 것과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다는 등 항간에 구구한 억측과 물의가 떠돌고 있는 실정이오니 그 진상을 밝혀주도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6표로 부결되다.

◇부의장 정 응 표

- 산회 선언하다.

(하오1시 10분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90년 3월 16일

시의원 김 성 균

시의원 김 상 대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